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809호 2011. 2. 11.(금)

## 차 례

###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6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1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56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1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64호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0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2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60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 서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상법」상 회사의 경우 「상법」상 회사에 준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

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확인서

4.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

5.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항에 의해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지정서 재발급)** 제3조제2항에 의해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이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지정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용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1회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절차)**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지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교부방법)** 재정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금을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을 받은 금액을 모두 지출한 경우에는 그 지출이 종료된 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말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세부 운영규정)** 구청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형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처리기간 60 일
------	---	--------------

<b>◆ 신청기관 개요</b>			
기관명		설립일	
대표자		*회원수	
소재지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상법상 회사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법인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조합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업자등록번호		가입보험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산재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연금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FAX)		E-mail	
일자리제공 (공고일 현재)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여 : 명)	명(여: 명)	%
		정부 재정지원 인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C/A)
		명(여: 명)	%
사회서비스제공 (공고일 전 3개월)	전체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B)	취약계층서비스 수혜자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및 내용		
부정수급 해당여부 (최근3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고용조정해당여부 (최근3개월)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b>◆ 사업내용</b>			
사업명		사업시작일	
사업지역		*사업분야	
*주된사업내용 (물품,서비스·용역)			
*매출액		사업수지(연간)	총수입: 총지출: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정부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	지원사업의 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및 기재요령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유급근로자의 명부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 사업계획서

\*회 원 수 :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만 기재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등

\*전체근로자수 :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근로자만 기재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을 말함

\*사업분야 : ①사회복지분야 ②보건·의료·보육분야 ③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 ④교육분야  
⑤환경분야 ⑥건설·주택분야 ⑦교통분야 ⑧정보통신분야 ⑨기타분야

\*주된 사업내용 : 생산물품 및 서비스·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생산 규모

\*매출액 : 생산물품 및 서비스·용역의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사업계획서

※ 사회적기업으로 전환가능성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계획서를 작성할 것

### ◆ 사업계획

사업내용			
마케팅 및 홍보방안			
취약계층고용비율		사업수행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제공비율			
사업시행시기			
사업수행도구 (교재, 프로그램 등)		서비스대상자 (인원수, 특성 등)	
서비스 내용 (내용, 가격 등)			
사회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			
사업개발·연구, 교육훈련 계획			

◆ 신청기업과 지역사회역할분담 내용		
신청기업과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	신청기업	
	연계기업	
	지자체	
	대학연구소병원 등	
	기타(단체간 컨소시엄 등)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수익발생 규 모 (산출근거)		
수익발생의 지 속 성		
수 익 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 계획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 조직 및 인사관련 내용							
단체연혁							
설립목적							
조직현황 (근로자수)							
최근 4년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참여실적				'07년~공고일 현재까지 정부·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			
연도	사업명	참여인원	부서(처)명	지원사업	지원액 (연간)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재정구조 (신청일* 전 6개월)	총수입	영업수입 (A)	정부·지자 체보조	민간기부·후원	회비 등 기타수입	총노무비 (B)	영업수입(A)/ 총노무비(B)
	원 100%	원 %	원 %	원 %	원 %	원	%
참여근로자 관련 내용	참여근로자요건 (특성, 자격 등)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수		주간근로시간 및 임금(월)

\* 공고일 기준도 무방

◆ 기간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3개월 단위로 작성)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9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별지 제4호서식]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제20(연도) - (연번)호

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지정기간 : 20 . . . ~ 20 . . .

위 기관을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사업보고서											
기관 일반 현황	조직	기관명			대표자명						
		(주된)소재지									
		주된 목적		<input type="checkbox"/> 일자리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제공형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업종									
		연계기업명									
	근로자	총근로자 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비율(B/A)		%	
		성 별		남자		명		여자		명	
		연령별		20세 미만	명	20세 이상 30세 미만	명	30세 이상 55세 미만	명	55세 이상	명
		고용계약 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 이상			
		월평균 임금		정규직		원		비정규직		원	
근로 시간		주40시간		명		주 40시간 이하		명			
총수입:		원				총비용(지출):		원			
회계	영업활동		비영업활동			노무비 (인건비)		교육 훈련비		기타	
	원(%)		원(%)								
	민간 시장	공공 시장	정부 지원	기업 후원	모기관 지원	금액		금액		금액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뒤쪽)

전 년 도	일 자 리	취약계층				일 반			
		총계:		명		총계:		명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저소득층	명	저소득층	명				
		고령자	명	고령자	명				
		장애인	명	장애인	명				
	사 회 서 비 스 제 공	서비스분야 및 내용							
		서비스 제공 가격	평균	원	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	총 계	명		
			일반국민	원		취약계층 비중(B/A)	%		
			취약계층	원		일반국민(A)	명		
					취약계층(B)	명			
기 타 형									
해 당 년 도 사 업 계 획	별지 작성								
<p>「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p> <p>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56호

##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14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2014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사업
2. 사업자성명 : 인천광역시장 송 영 길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378번지 일원
4. 수용재결 대상물건지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446외 3필지
5. 열람기간 : 2011. 2. 10. ~ 2011. 2. 25.
6.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902~3)
7. 의견서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8. 본 공고에 대한 세부목록(재결신청서 및 사업자 제시액 조서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032-560-5902~3)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소유자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수용재결 대상 소유자 명단 1부

2011. 2. 1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수용재결 대상자 명단

연번	소재지	지번	소유자	물건의 종류	송달주소
1	서구 연희동	446	정병섭	미나리	서구 신현동 302-1 신현e-편한세상 하늘채아파트 112-1105
2	서구 연희동	444-1	정병섭	미나리	상동
3	서구 연희동	444-2	정병섭	미나리	상동
4	서구 연희동	산 111-2	공병천	분묘	남구 용현5동 627-47 한국아파트 102-1609
	이 하 여 백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64호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1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1988년 제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가 2005.5.19 일부개정 된 이후 변화된 사회발전 및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못한 일부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창장의 대상을 사회단체 활동이 우수한 회원으로 확대하고, 포상권자의 표창대상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규정도 명문화하여 신설함 (안 제5조)
- 포상 대상자의 추천을 구민의 대표인 구 의회 의원도 할 수 있게 하며, 모든 포상자 결정에 있어 구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구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인천광역시서구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치게 하는 조항으로 변경함. (안 제11조, 안 제11조의2)
- 포상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 통제 규정을 구체화하여 포상 대상 인원수와 포상 수여 횟수에 제한을 둘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추가함. (안 제13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3. 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연락처 및 인적사항을 기재한 자유서식, A4용지)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095 총무과) 또는 Fax(560-40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또는 관련 요구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 기타 참고사항
- 관계인의 경우 전자문서 및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접수가능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로 한다.

제5조에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단체회원으로서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의 표창 추천의 경우에는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 또는 구 의회 의원의 추천으로 할 수 있다.

② 포상권자가 구 소속 공무원을 포상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해당 포상을 추서할 수 있다.

④ 단체 및 구민에 대한 포상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실·과장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제의 내용은 포상 대상 인원수 및 포상 수여 횟수의 제한에 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